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법촬영물등 조치의무사업자의 대상정보에 마약류 정보를 추가 >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19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촬영물등 조치의무사업자의 대상정보에 마약류 등 추가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10. 4.

다. 회부연월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불법촬영물등 조치의무사업자의 대상정보에 마약류 등 추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¹⁾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불법 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²⁾의 요청 등을 통하여’ 조치의무사업자³⁾가 인식한 경우이어야 함.

○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의무사업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최근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유통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⁴⁾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심사 시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적용 가능성,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 부담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들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고, 줄임말·은어 등의 사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마약류 정보에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그 밖에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부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아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3)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조치의무사업자’로 칭함(「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4) KBS, “다크웹에서 텔레그램으로 숨어드는 마약…대부분은 20~30대”, 2024.2.28.

해당하는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모든 마약류 정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마약류 정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제1항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정보’이므로 마약류 정보는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현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쳐 마약류 정보에 대한 삭제 등 차단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규정한 조항에 마약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삭제·접속차단 등의 유통방지의무를 정보형태, 피해유형 등이 상이한 마약류 정보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마약류관리

법」 5)에 이미 마약류 사용, 매매 등 정보를 전기통신회선 등을 통해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사용·매매 등 정보를 ‘불법촬영물 등’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해당 정보가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보통신망법」, 「마약류관리법」에서 마약류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신설의 필요성이 낮고,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규정한 조항에 마약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등을 통한 행동강령과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자율규제로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는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5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